

## 5.1.11 교수학습개발센터규정

제정 2013. 08. 26.  
개정 2016. 06. 23.  
개정 2017. 09. 17.  
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01. 28.  
전부개정 2021. 02. 16.  
개정 2021. 02. 25.  
개정 2023. 06.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에 규정된 초당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교수학습개발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수지원, 학습지원과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수·학습법 교육 및 상담, 수업촬영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06.08.>

제3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3.06.08.>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되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부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센터장의 임기 말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수업촬영 및 분석
4. 교수법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5.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학습상담 및 클리닉
7. 소수학생(외국인, 장애인 등) 학습지원
8. 학습법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9.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대학 내 협력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
10.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
1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진단조사 및 각종 조사연구 등 <신설 2021.02.25.>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호변경 2021.02.25.>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규정 제정 및 폐기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센터 사업운영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 사업운영 및 평가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 중에서 정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운영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환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